

부산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가단3417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규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민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범석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1. 10. 15.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2021. 10. 15. 접수 제52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 및 돈 수령

1)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위 회사가 E 전자복권에 투자하여 매일 2~4%의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데, 위 회사에 투자하면 매일 1%의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아래

3)항과 같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3) 원고는 2020. 8. 12. 2,000만 원, 2020. 10. 21. 1,000만 원, 2021. 2. 16.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다.

나. 매매예약 체결 및 가등기 경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21. 10.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D에 투자금 상당 돈을 교부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익상계

1)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그리고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8. 13.부터 2021. 9. 14.까지 피고와 주식회사 D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합계 147,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이미 수령한 147,900,000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결론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등이 손해액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

별지